

1. 개정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통령령 제3611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시행)에 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영을 위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등록과 운행 기록의 접수·보관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의 검사 업무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관련 업무, 운행기록의 접수·보관 및 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검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기재함(안 별지 제17호의2서식, 안 별지 제17호의3서식, 안 별지 제17호의8서식, 안 별지 제17호의10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
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개정 대상 별지 서식,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등 소유자 (신청인이 다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장치 표시	제조사	부착일자
	형식모델	부착기간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자동차등 표시	차명	형식·연식
	차종·용도	원동기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사유 (변경 시 작성)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제1항, 제33조의6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1부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87,000원 (부가세 포함)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의 종별 및 소유자에 따른 제출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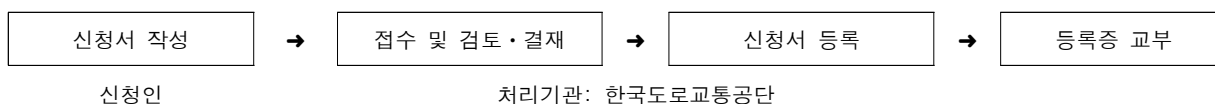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33조의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운수사업자	대표자(운영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장치 표시	제조사	부착일자
	형식모델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자동차등 표시	차명	형식·연식
	차종·용도	원동기형식
	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사유 (변경 시 작성)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5제2항, 제33조의6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한
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1부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87,000원 (부가세 포함)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의 종별 및 소유자에 따른 제출 서류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등록(변경)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장에 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사업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업무 담당자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업무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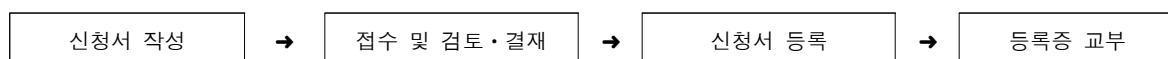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33조의6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sqrt{\quad}$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장치사용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동차등 소유주 (신청인과 다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번호		말소사유 발생일(장치사용 중단일)		
등록 말소 사유	☐ 부착기간 경과로 제작·공급자 또는 설치업자에게 제거 후 반납				
	☐ 사용의사 없음으로 중도사용 포기				
	☐ 자동차등의 사고·화재·매몰·침수 등으로 장치가 멸실되고, 수리불가하여 신규기기로 교체 후 재설치				
	☐ 자동차등 도난으로 인한 장치 분실				
	☐ 장치분실(음주측정부)로 인한 신규 교체(기기번호 변경)				
등록 말소 통보서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Γ $\Gamma \cup \{0\}$ $\Gamma \cup \{0, 1\}$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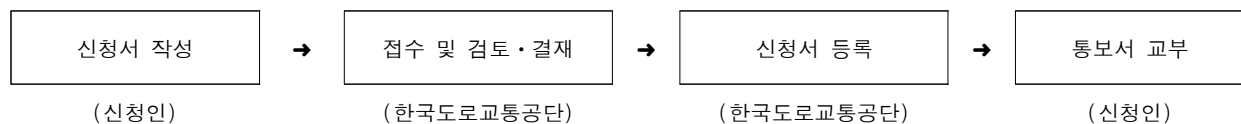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게 장치를 반납한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에서 발행한 장치 반품(반납)확인서 1부(부착기간 2년 경과 등) - 사용자 중도 사용포기의 경우 - 장치사용자 중도 사용포기 사유가 포함된 자유기술서(일자, 성명, 서명 포함) - 자동차등 폐차로 인한 장치 동반멸실의 경우 - 자동차등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 자동차등 도난 등으로 인한 장치 분실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 도난신고확인서 1부 - 부착 자동차등의 교통사고·화재·매몰·침수 등으로 인한 장치기능 회복불가로 폐기하는 경우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설치업체의 장치 재사용(AS)불가확인서	수수료 13,000원 (부가세 포함)
-------------	--	----------------------------

유의사항

※ 본 민원은 즉시 처리가 원칙이나 전산처리, 확인절차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 사유 및 처리예정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절차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검사 신청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원명	장치등록(고유)번호	
	제조사	모델명
	제어장치 일련번호	음주측정부 일련번호
장치부착 자동차등	자동차등 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	운행용도
	차대번호	소유자명 (전화:)
검사구분	[] 정상 작동여부 검사 [] 재검사	운행기록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귀중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수료 검사 (개 인) 66,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자) 66,000원(부가세 포함)	운행기록 제출 21,000원 (부가세 포함)
※ 수수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제1항 및 제33조의9 제1항에 따른 6개월 단위 검사 및 운행기록 제출 기준 금액입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8 부터 제33조의13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검사 또는 운행기록 제출 관련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출장에 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사시행	→	적·부판정	→	적합 판정	→	검사결과 통지 재검사 신청
신청인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